



제336회 정례회
2014. 12. 17.(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12월 1일
-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3.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14. 5.28. 공포)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다.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까지)
- 라.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안 제26조까지)
- 마.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함(안 제27조)
- 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한 재산의 보고, 보조사업 내용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 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보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 아.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15. 1. 1 시행)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 훈령)」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기존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보조금지원계획 수립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 이력관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함. 또한, 기존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보전을 위해 규정되었던 차등보조율 적용 조항을 본 개정안에서 삭제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 인천, 경남, 경기도의 경우 차등보조율 조항 존치.

□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4조(차등보조율의 적용)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별표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1.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산식에 의거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단,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적용 비율은 50:50으로 한다)

차등보조율 적용산식

$$\frac{\text{해당시.군재정자립도}}{\text{시.군재정자립도평균}} + \frac{\text{해당시.군재정자주도}}{\text{시.군재정자주도평균}} \times \frac{1}{2}$$

□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2조(차등보조율의 적용)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1.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에 따라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지 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인건비자제 충당 능력지수	①산식 : $\frac{\text{지방세수입} + \text{경상적세외수입}}{\text{공무원 인건비}} \times 100$ ②경상적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목 분류상의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수수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 분류상의 기본급·수당·기타직보수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지수와 전년도의 당초 예산상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2) 재정력지수	①산식 : $\frac{\text{기준재정수입액}}{\text{기준재정수요액}} \times 100$ ②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을 말한다. ③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의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자료를 사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안 제7조제1항제5호에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음. 즉, 시·군에 대한 보조금의 기준보조율도 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제15조(시·군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에 시·군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준보조율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규칙은 단체장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단체장의 재량범위를 과하게 부여하여, 보조금 지원의 재원분담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위배됨.
 - 따라서, 재원분담 영역인 시·군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규정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한바, 안 제15조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제1호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약어표기는 상위 조항인 제4조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13조의 “충청북도”는 제2조제1호의 약어표기 규정에 따라 “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31조에 명시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 안 제28조제2항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할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및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제31조의 제재의 범위는 법률의 위임을 넘어섬.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위임된 수준으로 제재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 “제28조제2항에 해당되어”
 - 수정 :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